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6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1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에서 결의된 협의회 규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행 공동회장(안양시장, 구로구청장)을 규약에 반영(안 제5조).
- 회장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 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함(안 제7조).
-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 1회로 함(안 제9조제1항).
-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 본 개정규약안은 안양천에 인접한 서울시 7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시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에서(2011.3.28) 결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임.
- 안 제5조는 회장 1인에서 현행 공동회장(안양시장, 구로구청장) 2인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반영함.
- 안 제7조에서는 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회장임기를 1년에서 전반기·후반기로 구분하여 2년으로 규정함.
- 안 제9조는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 1회로 정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자체단체의 과장에서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으로 규정함.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산업화로 인한 안양천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9년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창립되어 그동안 안양천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 안양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조류어류 및 수생식물생태조사 및 지도제작, 하천 정화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본 개정규약안은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환경 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기회에서 결의된 협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77
----------	----

제출년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 남서 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 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현행 공동회장(안양시장, 구로구청장)인 점을 규약에 반영(제5조)
- 회장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함(제6조, 제7조)
-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1회로 함(제9조제1항)
-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5항)
-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함(제14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4. 참고사항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2011. 3.28)시 규약개정 의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장1인”을 “공동회장으로 서울특별시 1인, 경기도 1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국장”을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매년도 첫 번째 정기회의시”를 “정기회의시”로 한다.

제7조 중 “1년”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를 “1년마다”로 한다.

제9조제5항에 “또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4조제1항 중 “협의회는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국장을 위원으로”를 “실무과장으로”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과장”을 “회장 및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u>협의회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u></p> <p>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국장을 <u>위원으로</u>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③ <u>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과장으로 한다.</u></p> <p>제17조 (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u>지방자치법 제146조의</u>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u>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u></p> <p>② ----- ----- <u>실무과장으로</u> ----- ----- -----.</p> <p>③ <u>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으로 한다.</u></p> <p>제17조 (조정요구) ① ----- ----- ----- ----- <u>「지방자치법」 제156조</u> ----- -----.</p>